

효성실버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본 사항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)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 -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2) 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,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①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, 변경기록지
 - ② 입소(이용)자의 권리
 - ③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- ④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
 - ⑤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

2. 계약

- 1)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- 2)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야한다.
 -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 -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
 - ③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 1부 (주민등록등본 1부, 건강진단서 1부, 치매진단서 (해당자) 1부, 수급자 증명서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) 1부)

3. 계약기간

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- 1)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
- 2)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.
 -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
 -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: 이사, 해외이민, 보호자 변경 등
 -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: 전염성 질환,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

4.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- 1)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 -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③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④ 이용자가 14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 - ⑤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
 -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2)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4)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,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,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,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5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.

5. 계약의 정지

이용자가 14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6. 월 이용료

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하며,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.

- 1)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,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(서비스)를 이용한다.
- 2)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(한도액)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 -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 분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	1,498,300원	1,331,800원	1,276,300원	1,173,200원	1,007,200원	566,600원

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 분	재 가 급 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6%, 9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

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. (1회당, 이용시간별)

■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0.01.01.) (원)

분류			2020년 수가	2020년 본인부담금
3시간 이상	1	등 급	35,030원	5,255원
	2	등 급	32,430원	4,865원
	3	등 급	29,940원	4,491원
	4	등 급	28,570원	4,286원
	5	등 급	27,210원	4,082원
	인지지원등급		27,210원	4,082원
6시간 이상	1	등 급	46,960원	7,044원
	2	등 급	43,500원	6,525원
	3	등 급	40,150원	6,023원
	4	등 급	38,790원	5,819원
	5	등 급	37,410원	5,612원
	인지지원등급		37,410원	5,612원
8시간 이상	1	등 급	58,410원	8,762원
	2	등 급	54,110원	8,117원
	3	등 급	49,960원	7,494원
	4	등 급	48,590원	7,289원
	5	등 급	47,210원	7,082원
	인지지원등급		47,210원	7,082원
10시간 이상	1	등 급	64,350원	9,653원
	2	등 급	59,610원	8,942원
	3	등 급	55,070원	8,261원
	4	등 급	53,680원	8,052원
	5	등 급	52,320원	7,848원
	인지지원등급		47,210원	7,082원
12시간 이상	1	등 급	69,000원	10,350원
	2	등 급	63,930원	9,590원
	3	등 급	59,050원	8,858원
	4	등 급	57,690원	8,654원
	5	등 급	56,310원	8,447원
	인지지원등급		47,210원	7,082원

※ 3시간 미만 이용 시 이용수가(3시간이상 ~ 6시간 미만)의 80% 금액 청구

4)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
- 식재료비 : 일 3,500원 - 간식비 : 일 1,500원

- 5)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1일 23,000원, 월 460,000원으로 하며, 주말(토)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.
- 6)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.
- 7) 이용료는 매월 10일 전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.
- 8)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, 이용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.
- 9) 이용료의 납부는 계좌 입금으로 한다.

7. 이용대상자

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- 1)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~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- 2) 등급 외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저소득자,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.

8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- 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 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③ 표준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2) 수급자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 -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- 3) 수급자의 권리
 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 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
 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 -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
 -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
 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 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 -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4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5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②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,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,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.
- ③ 수급자가 안전한 활동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